

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6 ~ 7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6. 12. 7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- 본 조례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활동을 지원하고, 또한 최근 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명이나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
- 보상요건의 강화로 인하여 일부 농업인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는 등 조례 운영상 다소의 문제점이 있어
- 보상요건을 일부 완화하여 피해 농업인에 대한 지원범위를 확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가. 피해보상 요건 완화 (안 제3조).

- 현 행
 - ┌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m² 이상
 - └ 총 피해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
- 개 정 (완화) : 위 요건 중 어느 하나만 해당될 경우에도 지원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자치법」 제15조

나. 예산조치 : '06년 당초예산 반영

다. 기 타

-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- 입법예고(06.11.21 ~ 12. 4) 결과 : 의견제출 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 피해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”를 “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”로 한다.

제3조제1항중 “농작물에 다음 각호의 규모 이상으로”를 “농작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이상으로”로 한다.

부 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②(적용규정) 제3조제1항은 2006. 1. 1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거창군야생동물등에의한피해지원조례</u></p> <p>제3조(보상요건)</p> <p>①이 조례에 의한 보상은 야생동물로 인해 관내에서 재배중인 <u>농작물에</u> <u>다음 각 호의 규모 이상으로</u> 직접 피해가 발생하여,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.</p> <p>1.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</p> <p>2. 총 피해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</p> <p>②(생략)</p>	<p><u>거창군 야생동물 등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</u></p> <p>제3조(보상요건)</p> <p>① ----- -----<u>농작물 중 다음 각 호의</u> <u>어느 하나 이상으로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 <p>1.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330 제곱미터 이상</p> <p>2. 총 피해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